

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5 ~ 61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연월일	2015. 8. 17.
제 출 자	거창군수

1. 제안이유

○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를 삭제하는 등 조례 시행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·해제 절차 등을 신설함(안 제3조제4항)
- 나. 일부제한지역에서 가축사육시설의 증축 시 인근주민의 60%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함(안 제4조제2항제5호)
- 다. 인용 법 조문 및 조례명을 수정함(안 제6조, 제7조, 별표 1)
 - 「거창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⇒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 - 법 제24조 ⇒ 법 제25조
 -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10조, 제22조 ⇒ 제12조, 제38조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조,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합 의 : 기획감사실(규제개혁, 법무통계담당)
- 라. 기타사항
 - (1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 - (2) 규제심사 : 규제삭제(안 제4조제2항제5호)
 - (3) 입법예고
 - (가) 예고기간 : '15. 8. 01. ~ 8. 20.
 - (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 - (4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 - (5) 성별영향분석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.”를 “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·고시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·고시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을 변경·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고시한다.

1. 변경·해제의 근거
2. 변경·해제된 구역의 위치, 범위 및 면적
3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일부제한구역에서의 가축사육시설의 경우 최초 가축사육시설 면적대비 100분의 20 이내로 증축

제6조제6항 중 “「거창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”를 “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법 제24조”를 “법 제25조”로 한다.

별표 1 전부제한구역 란 중 “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”을 “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지정) 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 <p>제4조(가축사육 제한 등) ① (생략)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 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. 1. ~ 4. (생략) 5. 일부제한구역에서 기존 가축사육시설의 100분의 20 이내로 증축할 경우 가장 가까운 마을의 세대주가 100분의 60 이상 동의한 경우(다만, 가축 사육시설의 신축·증축 후 일부제한구역에 신규로 전입하는 세대는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본다.) 6.~ 7. (생략)</p> <p>제6조(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·운영) ① ~ ⑤ (생략) ⑥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에 관한 사항은 「거창군 민간위 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</p> <p>제7조(처리범위 등) ① (생략)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할 때에는 법 제24조에 따라 신고대상 이하 소규모 축산 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처리 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1. ~ 2. (생략)</p>	<p>제3조(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지정) ① ----- -----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·고시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. ②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·고시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을 변경·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른 행정 예고를 거친 후 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고시한다. 1. 변경·해제의 근거 2. 변경·해제된 구역의 위치, 범위 및 면적 3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 <p>제4조(가축사육 제한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일부제한구역에서의 가축사육시설의 경우 최초 가축사육시설 면적대비 100분의 20 이내로 증축</p> <p>6.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·운영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----- -----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-----</p> <p>제7조(처리범위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법 제25조----- ----- 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